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8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4.

발 의 자:홍정민·김정호·김승남

박홍근 • 신영대 • 신정훈

유정주・이용우・전용기

한준호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,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,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4조제3항). 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4조제3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특허료 등의 반환) ①·②	제84조(특허료 등의 반환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	③
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	
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u>3년</u> 이	<u>5년</u>
지나면 할 수 없다.	